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19가단25705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필

변 론 종 결 2021. 6. 17.

판 결 선 고 2021. 8.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16.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8가단4678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들이 현재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08가단46783호 구상금 사건에서 2009. 8. 1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6. 10.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2009. 9. 4.경 확정되었다(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

나. 울산지방법원 2008가단46783호 구상금 사건에서 소장 부분, 변론기일통지서, 판결正本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들은 2019. 7. 23.경 울산지방법원 2019나1282호로 위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라. 울산지방법원은 피고들의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2021. 6. 24. ①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이 원고로부터 구상금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2006. 9. 9.경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인정한 후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현금보관증에 의한 약정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② 피고 C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금 내지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 B은 2021. 7. 12.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1다21968호로 상고하였고, 피고

C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1심판결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9나1282호로 추완항소가 제기됨에 따라 그 확정이 차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제1심판결의 소송과 동일한 청구를 하는 것으로서 중복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거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울산지방법원 2019나1282호 확정판결과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기판력에 의해 그 판결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금 내지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희근